

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2. 5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(제2조의2)

- (현행) 2026년 6월 30일 → (개정) 2031년 6월 30일

○ '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'에 따른 용어 정비

다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○ 본 조례안은 '포항시 노인복지기금'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'포항시 노인복지기금' 202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,921만 9천원이며 2026년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,500만원 집행 후 2026년도말 10억 3,122만 7천원 조성될 예정임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, 제2항에서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.
- 또한,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5년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임.
- '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'은 2025년 11월 12일 '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'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, 그에 따라 '포항시 노인복지기금'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